

[별표 4]

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세부사항(제12조 관련)

1. 보수교육

가. 교육기관

- 1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농식품공무원교육원, (사)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
- 2)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나. 교육대상

- 1)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으로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
- 2)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인증기관에 신규 또는 재 종사하려는 자
- 3) 1), 2)의 교육대상자는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다. 교육내용

- 1)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, 법령 및 고시 개정 사항
- 2)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, 인증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·방법 등으로 한다.

라. 교육시간 및 안내

- 1)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2) "가목"의 보수 교육기관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(사)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,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보수교육 시기, 장소 등을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.

마. 교육면제

- 1)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 이수 당해 연도에 한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- 2)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바. 기타

- 1)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.